고 양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시보

【제 1175 호】

2015년 05월 01일 (금)

선람	기관의 장

회람							

차 례

고 시

고양시 고시 제2015-118호	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1-9호선, 광로3-7호선)사업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	1
고양시 고시 제2015-119호	도시계획시설(대로2-12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	4
고양시 고시 제2015-121호	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	5
고양시 고시 제2015-122호	도시계획시설(오수중계펌프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	6

발행 : 고 양 시 편집 : 공보담당관

(우) 412-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(주교동 600) ☎ (031) 8075-2095

고양시 고시 제2015-118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1-9호선, 광로3-7호선)사업
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1. 고양시 고시 제2014-197호(2014.07.04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91-1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1-9호선, 광로3-7호선)사업에 대하여 한양컨트리클럽 진·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사유로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되어,
2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(지형도면고시)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(031-8075-314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2015. 5. 1.
고 양 시 장

1) 도시관리계획(경미한 사항) 결정(변경) 신청의 내용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1-9호선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대로	1	9	35~40	주간선도로	4,890	대로1-11 동산동 27-58	광로3-7 성사동 산131-9	일반도로	-	경고 제11호 (1977.01.27.)	
변경	대로	1	9	35~40	주간선도로	4,890	대로1-11 동산동 27-58	광로3-7 성사동 산131-9	일반도로	-	경고 제11호 (1977.01.27.)	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 : 대로1-9호선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사유
대로 1-9호선	대로 1-9호선	- 가감속차로 확보 : 면적 167㎡증	- 체육시설(골프장 : 한양컨트리클럽)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부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변경하고자 함

다. 도시계획시설(도로 : 광로 3-7호선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			
기정	광로	3	7	40~110	주간선도로	3,288	대로1-9 성사동 653-1	대로1-10 주교동 223-1	일반도로	-	경고 제11호 (77.01.27)	
변경	광로	3	7	40~110	주간선도로	3,288	대로1-9 성사동 653-1	대로1-10 주교동 223-1	일반도로	-	경고 제11호 (77.01.27)	

라. 도시계획시설(도로 : 광로 3-7호선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결정(변경) 내용	결정(변경)사유
광로 3-7호선	광로 3-7호선	- 가감속차로 확보 : 면적 316㎡증	- 체육시설(골프장 : 한양컨트리클럽)의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부를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변경하고자 함

2)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의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
-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91-13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
- 명칭 : 도로(대로1-9호선, 광로3-7호선)
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규모	위치	비고
대로 1-9호선	B = 35m ~ 40m, L = 4,890m	동산동 27-58 ~ 성사동 산131-9	77.01.27
광로 3-7호선	B = 40m ~ 110m, L = 3,288m	성사동 653-1 ~ 주교동 223-1	77.01.27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성명 : (주)한양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이승호, (사)서울컨트리클럽 이사장 홍순직
-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-114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- 기정 2010. 2. 22 ~ 2015. 04. 30
- 변경 2010. 2. 22 ~ 2015. 06. 30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: “별첨 조서와 같음”

사.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: 대로1-9호선 272㎡, 광로3-7호선 756㎡ 가·감속차로(별첨 조서와 같음, 변경없음)

3) 관계도면 : “게재생략”

○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(변경)

- 대로1-9호선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기정	변경	증감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관계	
1	고양시 덕양구 성사동	291-2	도	1,031	19	19	0	경기도					
2	“	291-3	전	643	60	60	0	경기도					
3	“	291-4	구	366	26	86	60	국토 교통부					
4	“	291-5	임	159	0	78	78	(주)한양 컨트리클럽	덕양구 원당동 198-114				
5	“	291-6	도	1,679	0	14	14	국토 교통부					
6	“	291-8	임	116	0	11	11	고양시					
7	“	291-9	도	277	0	4	4	경기도					
계		**7필지**		**4,271**	**105**	**272**	**167**						

- 광로3-7호선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기정	변경	증감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관계	
1	고양시 덕양구 성사동	291-3	전	643	214	214	0	경기도					
2	“	291-13	임	1,963	226	542	316	경기도					
계		**2필지**		**2,606**	**440**	**756**	**316**						

고양시 고시 제2015-119호

도시계획시설(대로2-12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고양시 고시 제2015-62호(2015.03.03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인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52-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대로2-12호선, 서오릉로 지하차도, 창릉교 확장)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되어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(도시.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) 및 같은법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(실시계획의 고시) 따라 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05월 01일
고 양 시 장

1) 사업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의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
-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52-1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-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: 대로2-12호선, 서오릉로 지하차도, 창릉교 확장)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(변경없음)

구분	규 모				연장 (m)	면적 (㎡)	기정	종점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					
결정	대로	2	12	30~89	5,625		광장4 성사동272-4	용두동1-44	
금회 시행	대로	2	12	30~89	802	23,273	원흥동 352-6	용두동 928	지하차도, 창릉교확장

라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(변경없음)
- 주소
 ○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돌마로 172 (정자동 217)
- 성명
 ○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재영)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(변경)
○ 당초) 2012.01.06. ~ 2015.04.30..
○ 변경) 2012.01.06. ~ 2015.06.30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; “별첨”조서와 같음 (변경없음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, 성명 : “바”항과 동일

아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“다”,“바”항과 같음

2) 관계도면 : “게재생략” (변경없음)

○ **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** (변경없음)

고양시 고시 제2015-121호

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고양시 고시 제2004-142호(2004.11.17.)로 결정된 일산동구 풍동 222-1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대로3-39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(지형도면고시)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(031-8075-3082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5. 5. 1.

고 양 시 장

□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	위치	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기점	종점				
기정	대로	3	39	26.25 ~ 27.5	보조간선도로	1,310	대로2-1 일산동 1355	대로1-10 식사동 산210-5	일반도로	-	고양시고시 제142호 (04.11.17.)	
변경	대로	3	39	26.25 ~ 27.5	보조간선도로	1,310	대로2-1 일산동 1355	대로1-10 식사동 산210-5	일반도로	-	고양시고시 제142호 (04.11.17.)	법면부지 일부제척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도로명	변경후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3-39호선	대로3-39호선	○ 법면부지 일부 선형변경	○ 기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중 도로법면 부지 일부를 축소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

□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개제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고양시 고시 제2015-122호

도시계획시설(오수중계펌프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고양시 고시 제2015-63호(2015.03.03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되어 시행 중인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9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오수중계펌프장)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되어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(도시.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) 및 같은법 제88조(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)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(실시계획의 고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(실시계획의 고시) 따라 변경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05월 01일
고 양 시 장

1) 사업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의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
-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9-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- 도시계획시설사업(오수중계펌프장)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(변경없음)

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	최초결정일	비고
하수도	오수중계펌프장	도내동 109-1번지	1,100	국토부고시 제2009-935호 09-09-28	
하수도	오수중계펌프장	도내동 109-1번지	1,100		

라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(변경없음)
- 주소
○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돌마로 172 (정자동 217)
- 성명
○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재영)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(변경)
○ 당초) 건축허가일 ~ 2015.04.30.
○ 변경) 건축허가일 ~ 2015.06.30.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; "별첨"조서와 같음 (변경없음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, 성명 : "바"항과 동일

아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"다","바"항과 같음

2) 관계도면 : "게재생략" (변경없음)

○ **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** (변경없음)